

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정 | 1996. 3. 1 | 훈령 제 9호 |
| 개정 | 1998. 10. 17 | 훈령 제 57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|
| | 1999. 3. 13 | 훈령 제 68호 |
| | 2000. 4. 6 | 훈령 제 86호 |
| | 2001. 3. 16 | 훈령 제 110호 |
| | 2003. 3. 31 | 훈령 제 147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|
| | 2005. 10. 5 | 훈령 제 196호(법제사무 처리 규정) |
| | 2007. 7. 1 | 훈령 제 263호 |
| | 2008. 12. 29 | 훈령 제 272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|
| | 2010. 12. 17 | 훈령 제 308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|
| 일부 개정 | 2013. 3. 8 | 훈령 제 341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|
| 일부 개정 | 2013. 12. 2 | 훈령 제 352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|
| 전부 개정 | 2014. 3. 10 | 훈령 제 359호(제명개정) |
| 일부 개정 | 2016. 7. 22 | 훈령 제 398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|
| 일부 개정 | 2017. 10. 2 | 규칙 제 8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용인시와 하부 행정기관인 읍·면·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비 정규전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용인시와 하부 행정기관인 읍·면·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(이하 “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”라 한다)는 용인시장과 읍·면·동장 소속으로 주 사무소에 둔다.

- 제3조(구성)**
- ①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(이하 “시 지원본부”라 한다)는 상황실, 군·경 합동상황실,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, 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.
 - ② 시 지원본부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,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 - ③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용인시는 제1부시장이 되고, 읍·면·동은 읍·면·동장이 된다. <개정 2017. 10. 2>
 - ④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
1. 군 · 경 합동상황실

가. 구성

군 · 경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 · 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하며,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172연대 3대대 작전장교 또는 용인동부 · 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중 지원본부장이 지정하는 1인이 된다.

나. 운영책임

1) 평시 : 용인동부경찰서장 또는 용인서부경찰서장 중 지원본부장이 지정하는 1인

2) 사태발생시 : 제172연대 3대대장

2. 시 지원본부 상황실

가. 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한다.

나. 상황실장은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 · 감독한다.

3. 분야별 지원반

가. 시 지원본부의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 · 재정동원지원반, 산업 · 수송 · 장비동원지원반, 의료 · 구호지원반, 보급 · 급식지원반, 통신 · 전산지원반,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며, 읍 · 면 ·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보급 · 재정지원반, 동원지원반, 통신 · 의료 · 구호지원반 중 2개 이상 4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한다.

나. 각 분야별 지원반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능별 지원반장과 지원반원으로 구성 · 운영하며, 각 분야별 지원반장은 지원반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

다. 각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 내 제요소가 공동 참여하며, 지원계통별 하부조직을 활용한다.

⑤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 기구는 별표와 같다.

제4조(통제) 각 분야별 지원반은 상황실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보고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무)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 지원본부(장)

- 가. 시 지원본부를 대표하여 사무를 관리하고, 구성 및 운영을 지휘·감독
- 나. 시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
- 다.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지휘·감독
- 라. 각 분야별 업무의 협조 및 조정통제
- 마. 산하 인접기관과의 지휘 및 협조체계 유지
- 바. 군·경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, 긴급 상황 또는 우발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태세 유지
- 사.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

2. 군·경 합동상황실(장)

- 가. 정보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정보업무를 관리
- 나.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
- 다. 군·경 작전상황 종합분석, 판단 및 조치
- 라. 시 지원본부 상황실에 정보 및 첨보제공, 협조체계 유지
- 마. 군 및 경찰 작전상황을 상황실(장)에게 통보
- 바. 주민신고 업무 관리
- 사. 각종 통신망 조정·통제 및 건의

3. 상황실(장)

- 가. 각종 상황을 파악·유지하고,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·통제
- 나.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
- 다.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
- 라. 통합방위 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
- 마. 시 지원본부 상황실 지휘·감독
- 바. 통합방위 작전 지원계획을 조정·통제

4. 총괄지원반(장)

- 가. 시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理

나.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

5. 인력·재정동원지원반(장)

가.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지원업무 관장

나. 예비군,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

다. 실비변상 및 가료, 구호 소요 제기

라. 국가동원계획의 인력과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

마.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

바. 주민통제 업무 관장

사. 예산지원계획 수립·시행

아. 시 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

자.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

6. 산업·수송·장비동원지원반(장)

가. 산업·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

단·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

나. 건설 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

다. 실비변상 및 회수·반환 업무 관장

라. 국가동원계획의 건설과 수송 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

마.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업무 관장

7. 의료·구호지원반(장)

가.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지원업무 관장

나. 의료·구호 조를 편성·운영하고,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·통제

다.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

라.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

마.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

바.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의료시설에서 치료하는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

8. 통신·전산지원반(장)

가. 통신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지원업무 관장

- 나. 시 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영
- 다.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 · 시행 및 감독
- 라. 관 · 군 · 경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
- 마. 통신지원조 편성 · 운영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
- 바. 국가동원계획의 통신지원

9. 보급 · 급식지원반(장)

- 가. 보급 및 급식지원계획을 수립 · 시행하고, 작전 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

- 나. 보급 및 급식장비 확보 지원

- 다.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자 동원 집행 준비

10. 홍보지원반(장)

- 가. 홍보 및 계몽계획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 · 시행

- 나. 홍보매개체를 조정 · 통제하고, 홍보(계몽)반을 편성 및 운영

- 다.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

- 라.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 · 시행

11. 읍 · 면 · 동의 각 지원반(장)

보급 · 재정지원반(장), 동원지원반(장), 통신 · 의료 · 구호지원반(장)은 각 지원반의 해당 임무를 수행하며, 그 외 임무는 총괄지원반(장)에서 수행

제6조(직무) ① 시 지원본부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부장

시 지원본부를 대표하며, 시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, 시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한다.

2. 상황실장

본부장을 보좌하고,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 · 감독하며, 본부장 부재 시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3. 지원반장

시 지원본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사항을 집행하며, 본

부장 및 상황실장 부재 시에는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4. 지원반원

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 · 시행하며, 분야별 지원 반장 부재 시에는 그 반의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읍 · 면 · 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부장

읍 · 면 · 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며, 읍 · 면 · 동의 통합 방위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, 읍 · 면 · 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대표한다.

2. 지원반장

읍 · 면 · 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 사항을 집행하며, 본부장 부재 시에는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
3. 지원반원

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 · 시행하며, 분야별 지원 반장 부재 시에는 그 반의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근무)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, 근무 조는 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 · 운용한다.

제8조(회의) ① 각급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는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.

② 시 지원본부 회의는 상황실장과 상황실 요원 전원 및 각 분야별 반장이 참석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 수 있다.

③ 읍 · 면 · 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회의는 각 분야별 반장이 참석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0. 17 훈령 제5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부칙 <1999. 3. 13 훈령 제68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. 4. 6 훈령 제86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3. 16 훈령 제11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1. 3. 31 훈령 제14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 훈령 제19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7. 7. 1 훈령 제263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2. 29 훈령 제272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9호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복지위생과장”으로 하고, 동조 제10호 중 “공보실장”을 “공보관”으로 하며, 동조 제11호 “기획 예산과장”을 “재정법무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 중 “기획”을 “정책기획”으로 하고, “민원행정”을 “민원여권”으로 하

며,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복지위생과장”으로 하고, “공보”를 “디지털홍보”로 한다.

제3조 생략

부칙 <2010. 12. 17 훈령 제308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「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5호 중 “재난안전과장”을 “하천방재과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6호 중 “도로과장”을 “건설과장”으로 하며, “교통과장”을 “대중교통과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9호 중 “농축산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 중 “정책기획”을 “기획”으로 하고, “재난안전과장”을 “하천방재과장”으로 하며, “민원여권”을 “민원행정”으로 하고, “도로과장”을 “건설과장”으로 하며, “교통과장”을 “대중교통과장”으로 하고, “도로행정”을 “건설행정”으로 하며, “도로관리”를 “도로시설2”로 하고, “농축산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하며, “관광개발”을 “관광정책”으로 하고, “보건기획”을 삭제한다.

부칙 <2013. 3. 8 훈령 제341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「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9호 중 “복지위생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 중 “주차시설”을 “주차관리”로 하고, “농산유통”을 “농식품유통”으로 하며, “복지위생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⑤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12. 2 훈령 제352호,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 12. 12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「용인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3호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5호 중 “하천방재과장”을 “안전총괄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 중 종합지원상황실 반장란의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하 고, 인력동원지원반 반장란의 “하천방재과장”을 “안전총괄과장”으로 한다.

② 및 ③ 생략

부칙 <2014. 3. 10 훈령 제359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7. 22 훈령 제398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「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관”으로, “행정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 로, “행정과”를 “행정지원과”로, “문화관광과”를 “문화예술과”로, “녹색성장 과장”을 “기후에너지과장”으로, “녹색성장과”를 “기후에너지과”로, “노인장 애인과”를 “노인복지과”로,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정책과장”으로, “지역 경제과”를 “일자리정책과”로, “기업지원과”를 “투자유치과”로, “상하수행정 과”를 “수도행정과”로 한다.

부칙 <2017. 10. 2 규칙 제88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 8의 회계과, 세 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·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⑯ 까지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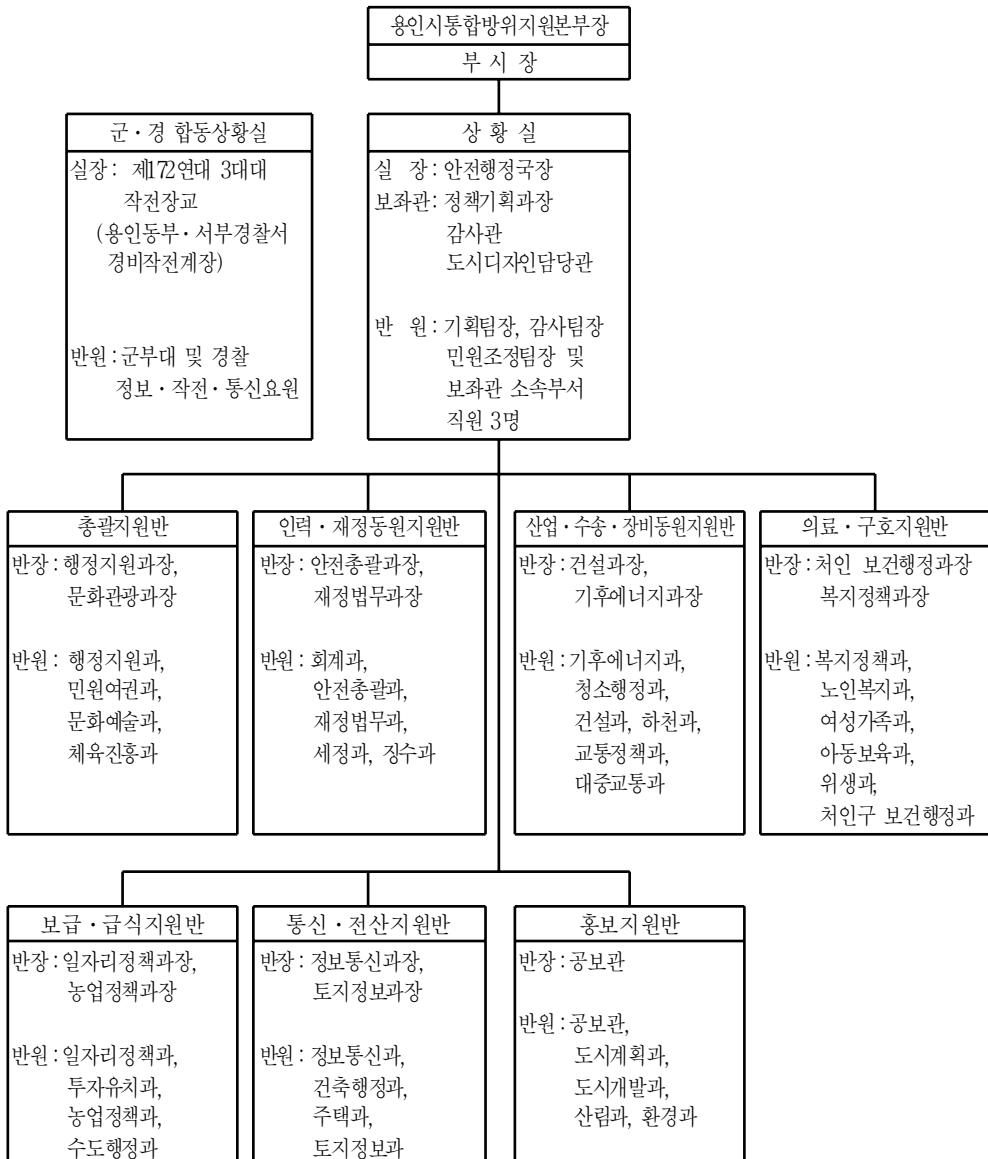
⑯ 「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⑰ 부터 ⑲ 까지 생략

[별표 1] <개정 2016. 7. 22>

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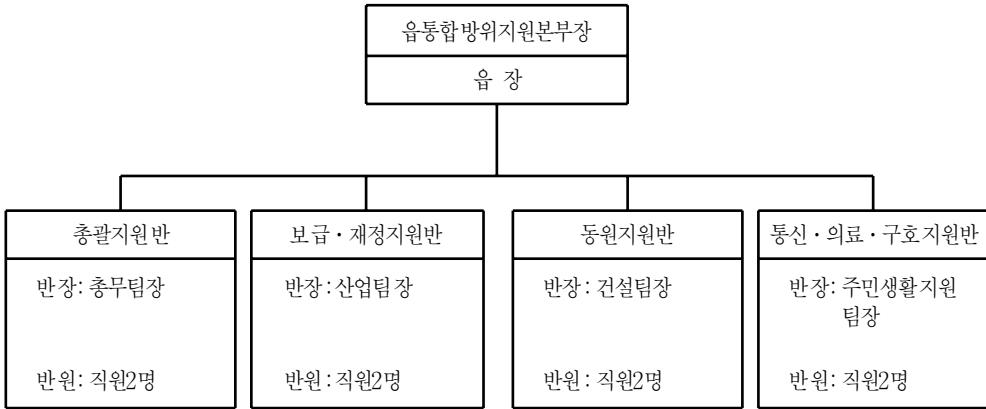
※ 미편성된 지원반의 업무/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

※ 전시 정부기능 업무(주민통제, 배급, 민방위대 통제 등) 병행

※ 반원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서는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추가 인원 지원

[별표 2]

읍 통합방위 지원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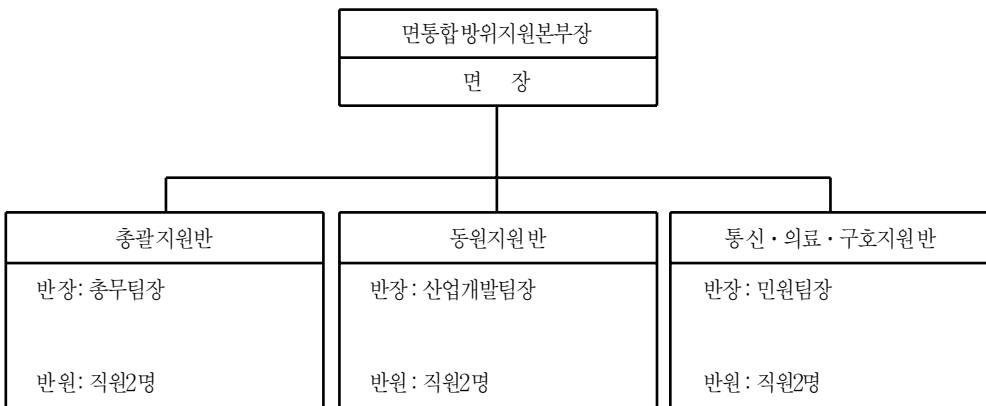


※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/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

※ 전시 정부기능 업무(주민통제, 배급, 민방위대 통제 등) 병행

[별표 3]

면 통합방위 지원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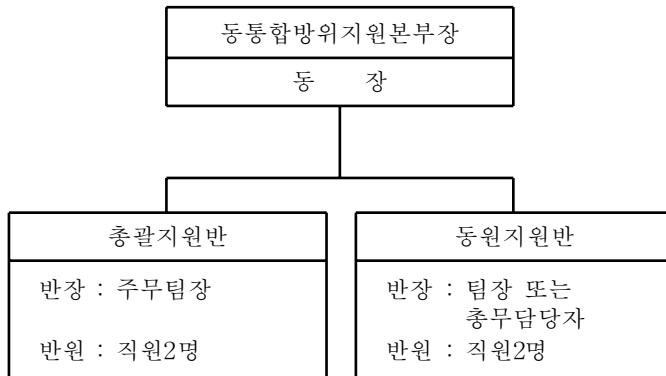


※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/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

※ 전시 정부기능 업무(주민통제, 배급, 민방위대 통제 등) 병행

[별표 4]

동 통합방위 지원본부



※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/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

※ 전시 정부기능 업무(주민통제, 배급, 민방위대 통제 등) 병행